

작성 방법

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한 의료기관 사업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9조의3 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,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.

- ① ~ ⑦ : 의료기관 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.
- ⑧ ~ ⑪ :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.
- ⑫ ~ ⑮ : ⑤거래기간의 환급 실적 합계를 적습니다.
- ⑯ : 의료용역 공급 시 발행한 '의료용역공급확인서' 상 일련번호(전표번호)를 적습니다.
- ⑰ : 의료용역 공급이 종료된 날이며, '의료용역공급확인서' 상 의료보건용역 공급일(연월일)을 적습니다.
- ⑱ :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·송금한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⑲ : 환급·송금증명서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⑳ : 의료용역 일련번호별 공급금액(세금포함), 부가가치세, 환급액을 적습니다. 공급금액(세금포함)은 '의료용역공급확인서'에 기재된 공급가격(부가가치세 포함)을 적습니다.
- ㉑ : 외국인환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
